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연도
**2026학년도 전공자율선택 체계
운영 기반 구축 연구 과업지시서**

2026. 05. 27.

사업영역	연구용역
사업명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전공자율선택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업
연구과제명	2026학년도 전공자율선택 체계 운영 기반 구축
주관부서	미래교육혁신원 교육혁신과

I.

사업 일반사항

1. 사업명 :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전공자율선택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과제명 : 2026학년도 전공자율선택 체계 운영 기반 구축
 3. 연구목적
 - 가.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학업 적응, 전공 탐색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
 - 나. 자유전공학부 교육목표에 기반한 교육과정 수립 및 교과목 개발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
 - 다. 학생 경험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한 비교과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개선 및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자유전공학부 운영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
 4. 기대효과
 - 가. 본 연구결과보고서 내용은 차년도 자유전공학부 도입 시 학칙 및 교육과정 편람에 반영하여 원활한 학사운영을 도모함
 - 나.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 및 비교과 이수체계도는 교내 홈페이지 및 입학 홍보자료 활용
 5.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6년 5월 27일 ~ 6월 1일	역량포털시스템 상 온라인 제출
심사기간	2026년 6월 2일 ~ 6월 5일	
선정 결과발표	2026년 6월 8일	강서대학교 포털시스템 공지
연구기간	2026년 6월 15일 ~ 9월 11일	
중간검수	2026년 7월 10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2026년 9월 11일	최종결과보고서
- ※ 위 일정은 주관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6. 연구비 : 3,000,000원
 7. 참가 자격 : 강서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이루어진 연구팀
 8. 선정대상 : 최종 1팀 선정

II.

과업지시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주요 과업	세부 과업
1. 자유전공학부 학생 지원체계	1.1. 전공 선택 후 학생지원 방안 구축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2.1 전공 탐색 및 설계 과목(교양/전공 이중 학수 번호 부여)
3. 자유전공학부 학생 경험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한 비교과	3.1 밀착형 상담 지원(Academic Advisor 배치방안)
	3.2 전공 앰버서더 (전공별 재학중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3 직무 부트
	3.4 Learning Community(공통 관심 주제로 스터디 그룹 형성 지원)
	3.5 학과 박람회
4. 평가	4.1. 학업 모니터링 방안
	4.2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환류
	4.3 예상 문제 및 대응 방안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연구보고서 상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RFP) 상의 주요 연구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나. 중간검수를 실시 후, 연구방향성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 시 반영 필요함
- 다. 사업예산은 혁신지원사업 예산지침에 따름 (붙임파일 참고)

III. 제안서 평가

1. 기본 방침

- 선정점수 산출기준에 따라서 1순위에 해당하는 연구자 선정
- 최저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됨

2. 제안서 항목 배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진 구성 적정성 (1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5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5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내용은 제안요청서(RFP)의 내용을 포함하는가?	10
	추진과정의 적합성	- 사업 추진 목적과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 추진전략, 절차, 내용이 적절한가?	20
연구내용의 타당성 (40%)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내용이 우리대학 발전방향 및 교육목적에 적합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25
	수행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론이 적절한가? - 연구계획서	15
연구계획의 연구결과 활용도 (20%)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20
총점			100

IV.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가.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전공자율선택 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 나.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전공자율선택 체계 구축 사업신청서

2. 제출방법 : 역량포털시스템 상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전공자율선택 체계 구축 사업 참여 신청 페이지에서 제출

3. 문의 : 미래교육혁신원 교육혁신과 고민선(T.02-2600-2246)

[별표1]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내 “원고료” 또는 “연구개발비(교육 콘텐츠)”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기준 준용
② 연구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기준에 따라 교통비 및 일비를 지급하되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자료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 인쇄비, 문헌복사비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및 전산처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컴퓨터 관련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기준 ○ 회의비 집행 시 대학혁신지원사업 회의록 양식으로 회의록 작성 ○ 회의관련 식사 후, 다과 및 음료(커피 등)를 추가로 집행하는 것 금지 ○ 회의장에서 원거리 식대 집행 불가 ○ 회의비 집행 시 주문내역 명기된 영수증 제출 ○ 세미나, 포럼 등 진행시 식대 최대 (30,000원/1인), 간식 (최대 (10,000원/1인)) ○ 커피전문점, 제과점의 경우, 다과 및 음료에 해당하여 1인 1만원 이하 집행 인정 ○ 회의 참석 수당 지급기준(※ 외부 인사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료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외부 자문료, 심사비, 원고료 및 번역료 	[원고료/번역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해당 자문자료, 심사 평가표, 원고 등과 같이 전문가 활용자료 제출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사무용품비)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경비 	○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5%이내
④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연구비 총액)/11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비고>

1.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수당)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 '참여연구원'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